

제131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(화상) 개최 결과

□ 일시·장소: '25. 8. 4.(월) 14:00 ~ 15:05 /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

□ 참 석 자

○ (주제·참석) 위원장 위임으로 총무위원이 위원회 회의실에서 주제

┌ (위원회) 총무위원 위원회 회의실 출석 / 위원장 등 6명 온라인 출석

└ (해경청) 정보외사국장, 안건 소관 국·과장, 기획재정담당관 등 10명

□ 개최 결과: 심의·의결 7건(원안의결 4, 수정의결 3), 보고 1건

【심의·의결 7건】

연번	형식	안 건 명	내 용	심의 결과	부서
일 괄 상 정	1 대령	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	「수상구조법」 개정·시행(25.12.21.)에 따라 수상구조사 등급별(지도사·1급·2급) 자격기준 등 세부 사항 마련 - 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(교육과정별 시설, 장비, 인력 기준 개선)	원안 의결	수색 구조
	2 부령	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	- 자격시험별 수수료 신설(필기 1만원, 실기 3만원, 면접 5만원) - 등급별 실기시험 채점 기준, 교육과정 마련(교육 시간, 과목 구성 등)	원안 의결	
3	부령	「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정안	「재난안전법」 개정·시행(25.10.2.)에 따라 해양 재난 시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에 필요한 사항 마련 - 평가단 구성, 자료 제출, 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·통보 -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, 우수·미흡 대응자 통보	원안 의결	
4	대령	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	「수상구조법」 개정·시행(25.12.21.)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자격기준 수상구조사 통합* 및 민간자격증 특례 부여 * (기존) 인명구조요원(민간), 수상구조사(국가) → (개정) 수상구조사 수정사항 민간자격 특례 인정 관련 문구를 법령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수정 ※ (기존) 시행령 시행 이후 3년 동안 인정 → (변경) 해당 자격증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	수정 의결	수상 레저
5	부령	「해양경찰수사규칙」 일부개정안	「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」 시행(25.10.10.)에 따라 수사서류 전자화 등 전자적 수사업무 처리 방식 규정 ※ (주요내용) △ 수사서류 전자화 △ 영상·영장 관리 강화 △ 조사 방식 개선 △ 체포서식 분리 및 절차 전자기록화	원안 의결	수사 기획

연번	형식	안 건 명	내 용	심의 결과	부서
6	예규	「해양경찰 외사장비 관리규칙」 제정안	• 외사장비의 표준화 및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취득·보관·사용·처분 절차 및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※ (주요내용) △ 목적 및 정의 △ 매년 구입·배정 계획 수립 △ 관리책임자 지정 △ 등록·보관 및 사용절차 △ 점검·교육 등 <u>수정사항</u> 외사장비의 기능·사용목적·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장비구분 목적을 강화	수정 의결	외사
7	훈령	「(해양경찰청) 방첩업무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「방첩업무규정」 개정('24.4.23.)에 따라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사항 개정 - 접촉신고 대상범위 확대(외국 정보기관 → 외국 정보·수사기관) - 접촉 신고 및 처리·기록을 방첩정보포털로 전자적 관리 <u>수정사항</u> 규정에서 '소속기관'이 일관되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어 법령 체계 정합성을 위해 용어 수정 ※ 소속기관 → 본청을 제외한 지방청 이하 하위기관 소속 해양경찰관서 → 해당 공무원이 속한 관서	수정 의결	

【보고 1건】

연번	안 건 명	부서
1	8월 주요 업무 보고	기획재정